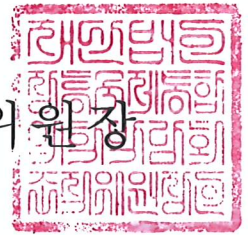


-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-

# 무·유연고 분묘개장공고(1차)

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2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하오니, 해당 분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(이장)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(이장)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2 월 14 일



## (재)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장

### 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
소재지	지 번	분묘기수	비 고
전남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	산81-1목	4	무연고
"	산82-7입	3	유연고
"	산64입	3	유연고,무연고
"	산66-1입	2	무연고

※ 편입토지현황 : 안양면 비동리 산81번지 등 37필지 77,227㎡

2. 개장사유 :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따른 개장(이장)

### 3. 개장방법

- 유연분묘 :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

### 4.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(무연분묘)

- 장 소 :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-1 유치공설공원묘지
- 기 간 :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종료 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함

5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(2015.12.14. ~ 2016.03.14.)

### 6. 유연분묘 개장신고

- 신고 처 : 장흥군 안양면사무소(주민복지담당)
  - 제출서류 : 연고자 증명서(죽보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 입증자료 등)
- ※ 분묘 이장비 지급과 관련하여 분묘 신고자는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·중·후 사진과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주민등록초본, 제적등본,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(화장의 경우 화장증명서 포함)등을 구비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7. 기 타

본 공고에 누락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한 분묘(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)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같음하며, 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(재)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(☎061-860-75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